



2018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 기본소득, 한국사회의 미래를 비추다

일시: 2018년 11월 23일(금)~24일(토)

장소: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3층 바실리오홀

2018. 11. 24 (토) 10:20 ~ 11:50

## 〈세션4〉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세션

사회: 김교성 (중앙대)

발표1: 성남시 청년배당의 정당화 담론에 관한 연구  
윤석영 (연세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발표2: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  
이건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상임연구원)

발표3: 기본소득과 재량시간: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이지은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석사)

#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sup>1)</sup>

이건민(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상임연구원)

## 1. 들어가며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는 2차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대표적으로, 김교성, 2009; 백승호, 2010; 강남훈, 2011; 이현주, 장지연, 전병유, 2017; 조경엽, 김영덕, 2017; 최태훈, 염명배, 2017; Callan et al., 1999; Garfinkel et al., 2003; Honkanen, 2014). 하지만 소득분포의 구체적인 양상에 따라, 세율의 크기에 따라, 면세점의 설정 및 높이에 따라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론적으로, 기술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전무했다. 즉 다양한 ‘각론들’만이 산발적으로 나왔을 뿐, ‘총론’ 내지 ‘일반이론’은 제출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는 t% 평률소득세-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Flat Income Tax; UBI-FIT) 모형을 기본으로 하여 소득분포의 형태, 세율, 면세점 등이 달라질 경우, 지니계수, 5분위배율, 10분위배율 등으로 측정된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론적·기술적 차원에서 보여주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은 수학적 증명 부분이다. 우선 면세구간이 전혀 없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는 t% 평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은 특정 소득분포에 관계없이 지니계수를 정확히 t% 개선함을 보인다. 그리고 면세구간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회 구성원의 세전소득이 면세점 이상일 경우에도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는 t% 평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은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니계수를 t% 개선한다는 사실을, 그러나 다만 위의 경우에서 ‘과세 후 단계’로부터 ‘과세 후-지급 후 단계’로 넘어갈 때 발생하는 소득재분배 효과의 일부분이 이 경우에서는 ‘정책 이전 단계’로부터 ‘과세 후 단계’로 넘어갈 때 동일한 크기만큼 과세효과로 이 전될 뿐임을 드러낸다. 위의 경우와 비교할 때 최종 단계에서 지니계수뿐만 아니라 5분위배율, 10분위배율 값도 일치하는데, 왜냐하면 최종적인 소득분포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또한 면세구간이 전혀 없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는 t% 평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에서, 동일한 소득분포 하에서 t값을 상승시킬 경우 순수혜규모는 t값에 비례하여 증가하지만 순수혜비율은 일정함을 보여준다. 아울러 정적편향 단봉분포(positively-skewed unimodal distribution)에서는 순수혜비율이 순부담비율보다 높음을, 부적편향 단봉분포(negatively-skewed unimodal distribution)에서는 순부담비율이 순수혜비율보다 높음을, 좌우대칭 단봉분포(symmetrical unimodal distribution)에서는 순수혜비율과 순부담비율이 각각 50%로 일치함을 증명한다.<sup>2)</sup> 구체적으로, 부적편향 단봉분포에서  $\alpha$ 를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사이에 위치한 사람들의 비율이라고 할 때 순부담비율은  $(50+\alpha)\%$ 가 되며, 정적편향 단봉분포에서  $\beta$ 를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 1) 연구의 초고는 2018년 9월 5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109회 콜로키움에서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몇 가지 노트”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으며, 2018년 10월 2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Alternative Working Paper No.5로 게재되었음을 밝힌다.
- 2) 단봉분포(unimodal distribution)는 봉우리가 하나인 분포를 의미한다. 정적편향 단봉분포는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며(skewed to the right) 왜도(skewness)가 양수인 단봉분포이다. 참고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하에서 소득분포와 자산분포는 정적편향 단봉분포의 형태를 띠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적편향 단봉분포는 왼쪽으로 꼬리가 길며(skewed to the left) 왜도가 음수인 단봉분포이다. 좌우대칭 단봉분포는 왼쪽과 오른쪽 중 어느 쪽에도 치우쳐지지 않으며 왜도가 0인 단봉분포이다.

사이에 위치한 사람들의 비율이라고 할 때 순수혜비율은  $(50+\beta)\%$ 가 된다. 이어지는 3절에서는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의 소득 및 자산 분포의 형태인 정적편향 단봉분포의 50명으로 구성된 가상의 경제를 설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 중 단 한 명이라도 세전 소득이 면세점 미만일 경우에는  $t\%$  평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에서의 지니계수 개선율은  $t\%$  미만이 됨을 보인다. 또한 면세점을 높일수록 납세자를 (초)고소득층으로만 국한시킴으로써 순수혜비율은 높아질 수 있지만, 과세액과 기본소득 지급액 자체를 줄임으로써 ‘정책 이전 단계’와 ‘최종 단계’를 비교해보았을 때 지니계수, 5분위배율, 10분위배율 개선효과는 점차 작아지게 됨을 드러낸다. 결론인 4절에서는 2절과 3절의 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면서 글을 맺는다.

## 2. 수학적 증명

본격적인 수학적 증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고에서의 전제조건을 밝히고 관련 용어를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개인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는  $t\%$  평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다. 따라서 누진적 또는 역진적 개인소득세와 기본소득을 결합한 모형뿐만 아니라, 법인세, 자산세, 소비세 등을 재원으로 한 기본소득 정책과 공유부 기금(사회자산기금; social wealth funds)을 기초로 한 기본소득 정책은 명시적인 분석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다음으로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과세와 기본소득 지급액을 통한 ‘직접효과’만을 다룰 뿐, 기본소득이 노동공급과 노동수요, 거시경제 등에 끼치는 영향으로 인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아울러 독자의 이해를 돕고 분석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하여,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서 3단계, 곧 ‘정책 이전 단계’(‘1단계’), ‘과세 후 단계’(‘2단계’ 또는 ‘과세 단계’), ‘과세 후 이전 후 단계’(‘3단계’, ‘기본소득 지급 후 단계’ 또는 ‘최종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표 1> 면세구간이 전혀 없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는  $t\%$  평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의 지니계수 개선 효과: 정책 이전 단계, 과세 후 단계, 기본소득 지급 후 단계 비교

구성요소	정책 이전 단계	세율로 과세 후 단계	기본소득 지급 후 단계
$-y_j$	$ y_i - y_j $	$(1 - T) y_i - y_j $	$[(1 - T)y_i + \frac{T}{n}(\sum_{i=1}^n y_i)] - [(1 - T)y_j + \frac{T}{n}(\sum_{i=1}^n y_i)]$ $= (1 - T) y_i - y_j $
$\mu$	$\mu$	$(1 - T)\mu$	$\mu$
지니계수 크기	$Gini$	$Gini$	$(1 - T)Gini$
지니계수 감소분	-	0	$T \times Gini$
지니계수 변화율	-	0%	100T%

출처: 이진민(2017)

주: 여기서 세율  $T$ 는  $\frac{t}{100}$  와 같으며,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짐. ‘정책 이전 단계’에서의 지니계수 크기를  $Gini$ 로 표현함.

<명제 1> 면세구간이 전혀 없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는 t% 평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은 특정 소득분포에 관계없이 지니계수를 정확히 t% 개선한다.

증명 및 설명:

이는 이견민(2017)과 Miller(2017: 245-246)에서 이미 수학적으로 증명된 바 있다.

지니계수 공식은  $\frac{1}{n} \sum_{i=1}^n \sum_{j=1}^n |y_i - y_j|$ 와 같으며, 여기서  $n$ 은 전체인구,  $\mu$ 는 평균소득,  $y_i$ 는  $i$ 의 소득,  $y_j$ 는  $j$ 의 소득을 의미한다.

지니계수의 구성요소를 분자와 분모 부분으로 각각 나누어서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쉽다(이하 논의는 <표 1> 참조). 지니계수의 분자 부분은  $\sum_{i=1}^n \sum_{j=1}^n |y_i - y_j|$ 인데, 결국 각자의 소득격차인  $|y_i - y_j|$  부분이 각 단계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지니계수의 분모 부분은  $2n^2\mu$ 인데, 특정 사회에서 특정 시점의 전체인구  $n$ 은 일정하므로  $\mu$ 가 각 단계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고찰하면 된다. 정책 이전 단계에서 과세 후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분자와 분모 모두  $(1 - T)$ 배가 되므로(즉 각각  $(1 - T)|y_i - y_j|$ 와  $(1 - T)\mu$ ) 지니계수는 불변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측정단위의 크기에 의존하지 않는 지니계수의 특성, 곧 규모독립성(scale independence)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과세 후 단계에서 기본소득 지급 후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분자 부분은 정책 이전 단계의  $(1 - T)$ 배로 유지(즉  $(1 - T)|y_i - y_j|$ )되는 반면 분모 부분은 정책 이전 단계와 같은 크기로 회복(즉  $\mu$ )되므로 지니계수의 크기는  $(1 - T)Gini$ 로 줄어든다는 사실이 쉽게 드러난다. 아울러 지니계수 감소분은  $T \times Gini$ , 지니계수 감소율은  $100T\%$ 로서, 지니계수 감소분과 감소율 모두  $T$  또는  $t$  값에 정확히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를 통해, 1단계인 정책 이전 단계에서 2단계인 과세 후 단계로 넘어갈 때에는 지니계수 개선율이 0이지만, 2단계인 과세 단계에서 3단계인 기본소득 지급 후 단계로 넘어가면서 지니계수가 t% 개선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면세구간이 전혀 없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는 t% 평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은 각 개인 간의 격차를  $T$ (또는  $t$ )값에 비례하여 감소시키지만,  $T$ 가 1보다 작은( $t$ 가 100보다 작은) 한편 기본소득 지급액은 동일하므로 각 개인의 소득 순위는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순위 보존(rank preservation) 특성을 지님을 확인할 수 있다.

<명제 2> 면세구간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회 구성원의 세전소득이 면세점 이상일 경우,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는 t% 평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은 특정 소득분포와 관계없이 정책 이전 단계와 비교했을 때 지니계수를 정확히 t% 개선한다. 다만 명제 1의 경우에서 2단계인 과세 단계에서 3단계인 최종 단계로 넘어갈 때 발생했던 소득재분배 효과의 일부분이 여기서는 1단계인 정책 이전 단계에서 2단계인 과세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동일한 크기만큼 과세효과로 이전될 뿐이다.

증명 및 설명:

기본적인 접근방법은 <명제 1>에서와 동일하다(이하 논의는 <표 2> 참조). 지니계수의 구성요소를 분자와 분모 부분으로 각각 나누어서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쉽다. 지니계수의 분자 부분은  $\sum_{i=1}^n \sum_{j=1}^n |y_i - y_j|$ 인데, 결국 각자의 소득격차인  $|y_i - y_j|$  부분이 각 단계에서 어떻게 변화

하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지니계수의 분모 부분은  $n\mu$ 인데, 특정 사회에서 특정 시점의 전체 인구  $n$ 은 일정하므로  $\mu$ 가 각 단계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고찰하면 된다. 면세점에 해당하는 소득을  $f$ 라고 하면 모든 사회 구성원의 세전소득이  $f$  이상이라고 했으므로  $y_i > f$ 로 표시할 수 있다. 정책 이전 단계에서 과세 후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분자 부분은  $(1 - T)|y_i - y_j|$ 배가 되는 반면(즉  $(1 - T)|y_i - y_j|$ ) 분모 부분은  $(1 - T)\mu + Tf$ 로서  $(1 - T)\mu$ 보다 크게 되므로 지니계수는 감소하며 비록 선형적이지는 않지만  $T$ 값이 커짐에 따라 지니계수가 더 많이 줄어듦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과세 후 단계에서 기본소득 지급 후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분자 부분은 정책 이전 단계의  $(1 - T)$ 배로 유지(즉  $(1 - T)|y_i - y_j|$ )되는 반면 분모 부분은 정책 이전 단계와 같은 크기로 회복(즉  $\mu$ )되므로 지니계수의 크기는  $(1 - T)Gini$ 로 줄어든다는 사실이 쉽게 드러난다. 아울러 정책 이전 단계와 비교했을 때의 지니계수 감소분은  $T \times Gini$ , 지니계수 감소율은  $100T\%$ 로서, 지니계수 감소분과 감소율 모두  $T$  또는  $t$  값에 정확히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를 통해, 1단계인 정책 이전 단계에서 2단계인 과세 후 단계로 넘어갈 때에는 지니계수 개선율은 0이 아닌 양수이고, 2단계인 과세 단계에서 3단계인 기본소득 지급 후 단계로 넘어가면서 지니계수가  $t\%$ 가 아닌  $t\%$  미만으로 개선되기는 하지만, 1단계인 정책 이전 단계와 3단계인 기본소득 지급 후 단계를 비교할 경우 지니계수가 정확히  $t\%$  개선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명제 1의 경우에서 2단계인 과세 단계에서 3단계인 최종 단계로 넘어갈 때 발생했던 소득재분배 효과의 일부분이 여기서는 1단계인 정책 이전 단계에서 2단계인 과세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동일한 크기만큼 과세효과로 이전될 뿐인 것이다.

아울러 면세구간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회 구성원의 세전소득이 면세점 이상일 경우,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는  $t\%$  평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은 명제 1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개인 간의 격차를  $T$ (또는  $t$ )값에 비례하여 감소시키지만,  $T$ 가 1보다 작을( $t$ 가 100보다 작을) 한편 기본소득 지급액은 동일하므로 각 개인의 소득 순위는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순위 보존 특성을 지님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면세구간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회 구성원의 세전소득이 면세점 이상일 경우,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는  $t\%$  평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의 지니계수 개선 효과: 정책 이전 단계, 과세 후 단계, 기본소득 지급 후 단계 비교

구성요소	정책 이전 단계	세율 $T$ 로 과세 후 단계	기본소득 지급 후 단계
$ y_i - y_j $	$ y_i - y_j $	$ [y_i - T(y_i - f)] - [y_j - T(y_j - f)]  = (1 - T) y_i - y_j $	$(1 - T) y_i - y_j $
$\mu$	$\mu$	$(1 - T)\mu + Tf$	$\mu$
지니계수 크기	$Gini$	$Gini$ 보다 작은 값이며, $T$ 값이 클수록 더 작아짐 ( $(1 - T)\mu < (1 - T)\mu + Tf$ 가 성립하므로)	$(1 - T)Gini$
지니계수 감소분	-	+ ( $T$ 값이 클수록 더 커짐)	$T \times Gini$
지니계수 변화율	-	+ ( $T$ 값이 클수록 더 커짐)	$100T\%$

주: 여기서 세율  $T$ 는  $\frac{t}{100}$  와 같으며,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짐. '정책 이전'의 지니계수 크기를  $Gini$ 로 표현함. 면세점에 해당하는 소득을  $f$ 로 표시함. 여기서  $y_i > f$ .

보론:

이러한 특성은 비단 지니계수뿐만 아니라 5분위배율과 10분위배율에서도 동일하게 성립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면세구간이 없는 경우와 비교해볼 때, 면세구간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회 구성원의 세전소득이 면세점 이상인 경우는 과세 단계에서 세금으로 덜 거둔 금액의 크기와 기본소득 지급 단계에서 기본소득으로 덜 지급된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곧 ‘더 걷고 더 주는 경우’와 각각 동일한 액수만큼 ‘덜 걷고 덜 주는 경우’의 차이일 뿐인 것이다. 즉 최종적인 소득분포는 일치한다.

<명제 3> 동일한 소득분포 하에서, 면세구간이 전혀 없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는 t% 평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에서 t값을 상승시킬 경우 순수혜규모는 t값에 비례하여 증가하지만, 순수혜비율은 일정하다.

증명 및 설명:

인 의 기본소득을 위한 납세액:  $y$

개인  $i$ 의 기본소득 지급액:  $T\mu$

여기서  $\mu$ 는 평균소득,  $y_i$ 는 개인  $i$ 의 소득을 의미한다. 또한 세율  $T$ 는  $\frac{t}{100}$  와 같으며,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개인의 소득이 사회 전체의 평균소득과 같은 사람( $y_i = \mu$ )은 기본소득을 위한 납세액( $Ty_i$ )과 기본소득 지급액( $T\mu$ )이 일치하게 된다. 즉 손익분기점 소득자라 할 수 있다. 개인의 소득이 사회 전체의 평균소득 미만인 사람( $y_i < \mu$ )은 납세액보다 기본소득 지급액이 더 크므로 ( $Ty_i < T\mu$ ) 순수혜자, 사회 전체의 평균소득 초과인 사람( $y_i > \mu$ )은 기본소득 지급액보다 납세액이 더 크므로( $Ty_i > T\mu$ ) 순부담자가 된다.

한 사회에서 ‘정책 이전’ 단계에서 평균소득 미만인 사람( $y_i < \mu$ )의 비율과 평균소득 초과인 사람( $y_i > \mu$ )의 비율은  $T$ 값과 무관하다. 단 순수혜규모(순부담규모)는  $T$ 값에 비례한다. 구체

적으로, 순수혜규모는  $\sum_{i=1}^n T(y_i - \mu) \mid \text{where } y_i < \mu \text{로,}$  순부담규모는

$\sum_{j=1}^{n_2} T(y_j - \mu) \mid \text{where } y_j > \mu \text{로 표시할 수 있다. 두 값은 서로 일치하며, 수식을 보면 둘 다 } T \text{값에 비례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명제 4> 면세구간이 전혀 없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는 t% 평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 하에서, 정적편향 단봉분포에서는 순수혜비율이 순부담비율보다 높으며, 부적편향 단봉분포에서는 순부담비율이 순수혜비율보다 높다. 좌우대칭 단봉분포에서는 순수혜비율과 순부담비율이 50%로 일치한다. 부적편향 단봉분포에서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사이에 위치하는 사람의 비율을  $\alpha\%$ 라고 한다면, 순부담집단의 비율은  $(50+\alpha)\%$ 가 된다. 반면 정적편향 단봉분포에서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사이에 위치하는 사람의 비율을  $\beta\%$ 라고 한다면, 순수혜집단의 비율은  $(50+\beta)\%$ 가 된다.

증명 및 설명:

개인  $i$ 의 납세액:  $Ty_i$

개인  $i$ 의 기본소득 지급액:  $T\mu$

여기서  $\bar{y}$ 는 평균소득,  $y_i$ 는 개인  $i$ 의 소득을 의미한다. 또한 세율  $t$ 는  $\frac{t}{100}$ 와 같으며,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면세구간이 전혀 없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는  $t\%$  평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은 ‘평균’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평균’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여기서도 각 개인 간의 격차를  $T$  (또는  $t$ )값에 비례하여 감소시키지만,  $T$ 가 1보다 작음( $t$ 가 100보다 작음) 한편 기본소득 지급액은 동일하므로 각 개인의 소득 순위는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순위 보존 특성을 지님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의 소득이 사회 전체의 평균소득과 같은 사람( $y_i = \mu$ )은 기본소득을 위한 납세액( $Ty_i$ )과 기본소득 지급액( $T\mu$ )이 일치하게 된다. 즉 손익분기점 소득자라 할 수 있다. 개인의 소득이 사회 전체의 평균소득 미만인 사람( $y_i < \mu$ )은 납세액보다 기본소득 지급액이 더 크므로 ( $Ty_i < T\mu$ ) 순수혜자, 사회 전체의 평균소득 초과인 사람( $y_i > \mu$ )은 기본소득 지급액보다 납세액이 더 크므로( $Ty_i > T\mu$ ) 순부담자가 된다.

개인의 소득이 사회 전체의 평균소득 미만이거나 초과인 사람은 정책 이전 단계에서는 평균 소득자와의 격차가  $y_i - \mu$ 이었는데, 과세 후 지급 후 단계에서는 평균소득자와의 격차가  $|(1-T)(y_i - \mu)|$ 로 줄어들게 된다(여기서  $0 < T < 1$ ).  $T$ 값에 비례하여 격차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기본소득은 소득이 평균이 아닌 사람들을 평균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제도라 볼 수 있으며,  $T$ 값이 커질수록 끌어당기는 힘의 세기는 더 커지게 된다.

부적편향 단봉분포의 경우 중위소득이 평균소득보다 더 크다. 그러므로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사이에 위치한 소득자의 경우에는 기본소득 정책으로 인하여 소득이 자신의 원래 소득보다 낮은 평균소득 방향(소득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끌어당겨지게 된다.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사이에 위치한 소득자가 순부담자가 되는 것이다.

반면 정적편향 단봉분포의 경우 중위소득이 평균소득보다 더 작다. 따라서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사이에 위치한 소득자의 경우에는 기본소득 정책으로 인하여 소득이 자신의 원래 소득보다 높은 평균소득 방향(소득이 커지는 방향)으로 끌어당겨지게 된다.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사이에 위치한 소득자가 순수혜자가 되는 것이다.

종합하면, 기존 분포에서 중위소득이 평균소득과 얼마나 떨어져있는지, 더 구체적으로는 소득이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사이에 분포하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순수혜비율과 순부담비율이 결정된다. 부적편향 단봉분포에서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사이에 위치하는 사람의 비율을  $\alpha\%$ 라고 한다면, 순수혜집단의 비율은  $(50-\alpha)\%$ , 순부담집단의 비율은  $(50+\alpha)\%$ 가 된다. 반면 정적편향 단봉분포에서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사이에 위치하는 사람의 비율을  $\beta\%$ 라고 한다면, 순수혜집단의 비율은  $(50+\beta)\%$ , 순부담집단의 비율은  $(50-\beta)\%$ 가 된다.

**보론:**

한 사회의 소득 및 자산 분포가 불평등하면 할수록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은 더 벌어지고 따라서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사이에 위치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더 커지므로, 순수혜비율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 3. 면세점의 설정 및 높이가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미치는 영향: 50명으로 구성된 가상의 경제를 통한 모의실험

#### 3.1. 50명으로 구성된 가상의 경제 설정

면세점의 설정 및 높이가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간명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50명으로 구성된 가상의 경제를 설정한다. 50명으로 선택한 것은 5분위 배율과 10분위배율의 변화를 살펴보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면세점의 설정 및 높이가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는 월소득 100만원 3명, 200만원 4명, 300만원 7명, 400만원 9명, 500만원 7명, 600만원 6명, 700만원 5명, 800만원 4명, 900만원 3명, 1,000만원 2명으로 구성하였다. 평균 506만원, 중위수 500만원, 최빈값 400만원, 왜도 0.280인데, 이를 통해 ‘최빈값<중위수<평균’, 그리고 양수인 왜도값이라는 정적편향 단봉분포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분배지표를 살펴보면, 5분위배율은 4.3, 10분위배율은 6.71, 지니계수는 0.266로서(<표 3> 참조) 각각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지표 값보다 작은 편이다. 즉 여기서의 가상의 경제가 현재 우리 사회보다 소득불평등도가 낮다. 하지만 여기서 유념해야 할 사항은 가상의 경제에서 소득분배지표의 절대적 수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값들이 면세점의 설정 및 높이에 따라서 그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표 3> 50명으로 구성된 가상의 경제에서의 소득분배지표: 정책 이전 단계

소득분배지표	값
5분위배율	4.3
10분위배율	6.71
지니계수	0.266

주: 5분위배율과 10분위배율은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지니계수는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 3.2. 면세점의 설정 및 높이가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미치는 영향: 50명으로 구성된 가상의 경제를 통한 모의실험

면세점의 설정 및 높이가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면세구간이 없는 경우(0만원)부터 시작하여 100만원 간격으로 면세점이 상승하였을 때 지니계수, 5분위배율, 10분위배율을 중심으로 살펴본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다. t값이 너무 작으면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 자체가 너무 작으며 이에 따라 면세점의 설정 및 높이가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미치는 영향도 온전히 식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여기서는 t값을 30으로 선택하였다.

1단계인 정책 이전 단계에서 2단계인 과세 단계(‘과세 후 단계’)로 넘어갈 때 ‘소득세율 30% - 1/n 기본소득 모형’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면세점의 설정 및 높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의 문제와, 1단계인 정책 이전 단계와 3단계인 최종 단계(‘과세 후 지급 후 단계’)를 비교하여 ‘소득세율 30% - 1/n 기본소득 모형’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면세점의 설정 및 높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어쩌면 면세점을 어느 정도 높게 설정하는 것이 얼핏 보아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납세액만을 고려한 채 납세액과 기본소득 지급액을 균형 있게 고려하지 못한 재정환상(fiscal illusion)에 빠진 것일 수 있다(강남훈, 2017: 16). 이는 아래의 <표 4>와 <표 5>의 비교를 통해서 확인가능하다.

먼저 <표 4>는 1단계인 정책 이전 단계에서 2단계인 과세 단계(‘과세 후 단계’)로 넘어갈 때 ‘소득세율 30% - 1/n 기본소득 모형’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면세점의 설정 및 높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준다. 전체적인 양식은 일정 수준까지 면세점을 높이면 과세효과 면에서의 기본소득의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가 더 커지지만(5분위배율과 지니계수는 면세점이 300만원일 때, 10분위배율은 면세점이 200만원일 때 가장 크게 개선됨), 특정 수준을 초과하면 면세는 과세효과 면에서의 기본소득의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가 점차 작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기본소득 명목재원’과 ‘면세로 인해 줄어든 과세액’의 합은 일정한데, 면세점이 특정 지점을 넘어서면서부터는 ‘면세로 인해 줄어든 과세액’ 자체가 커지므로 과세액을 줄임으로써 과세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면세점이 200만원일 때까지만 해도 기본소득 명목재원이 면세로 인해 줄어든 과세액보다 크지만, 면세점이 300만원일 때부터는 면세로 인해 줄어든 과세액이 기본소득 명목재원보다 더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면세점에 따른 ‘소득세율 30% - 1/n 기본소득 모형’의 소득재분배 효과: 과세 단계

면세점	5분위배율		10분위배율		지니계수		기본소득 명목 재원	면세로 인해 줄어든 과세액
	값	감소분 (감소율)	값	감소분 (감소율)	값	감소분 (감소율)		
0만원	4.3	0 (0%)	6.71	0 (0%)	0.266	0 (0%)	7,590	-
100만원	3.72	0.58 (13.54%)	5.38	1.34 (19.95%)	0.245	0.021 (7.81%)	6,090	1,500
200만원	3.47	0.83 (19.40%)	<b>5.13</b>	<b>1.59</b> <b>(23.62%)</b>	0.232	0.033 (12.57%)	4,680	2,910
300만원	<b>3.46</b>	<b>0.84</b> <b>(19.53%)</b>	5.34	1.37 (20.43%)	<b>0.227</b>	<b>0.039</b> <b>(14.61%)</b>	3,390	4,200
400만원	3.61	0.69 (16.05%)	5.56	1.16 (17.23%)	0.229	0.036 (13.67%)	2,310	5,280
500만원	3.76	0.54 (12.56%)	5.77	0.94 (14.04%)	0.237	0.028 (10.72%)	1,500	6,090
600만원	3.91	0.39 (9.07%)	5.99	0.73 (10.85%)	0.246	0.020 (7.36%)	900	6,690
700만원	4.06	0.24 (5.58%)	6.2	0.51 (7.66%)	0.254	0.012 (4.34%)	480	7,110
800만원	4.20	0.11 (2.44%)	6.41	0.3 (4.47%)	0.260	0.005 (2.05%)	210	7,380
900만원	4.27	0.03 (0.70%)	6.63	0.09 (1.28%)	0.264	0.002 (0.62%)	60	7,530

주: 5분위배율과 10분위배율은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지니계수, 감소분과 감소율은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반올림으로 인해 수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다음으로 <표 5>는 1단계인 정책 이전 단계와 3단계인 최종 단계(‘과세 후 지급 후 단계’)를 비교하여 ‘소득세율 30% - 1/n 기본소득 모형’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면세점의 설정 및 높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드러낸다. 전체적인 양식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세전소득이 면세점보다 높은 경우, 곧 여기서는 면세구간이 없을 때부터 시작하여 면세점이 100만원에 이를 때까지의 구간에서는 지니계수, 5분위배율, 10분위배율 값이 모두 같으며(<명제 1>, <명제 2> 및 보론 참조) 이때의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가 최대임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면세점이 100

만원을 초과하여 높아질수록 비록 선형적이지는 않지만 지니계수, 5분위배율, 10분위배율 감소분 및 감소율이 점차로 작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본소득 명목재원’과 ‘면세로 인해 줄어든 과세액’의 합은 일정한데, 면세점이 어떤 사회 구성원의 세전소득을 넘어서면서부터 시작하여 상승함에 따라 ‘면세로 인해 줄어든 과세액’ 자체가 커 지므로 과세액과 기본소득 지급액을 줄임으로써 ‘과세 및 기본소득 지급’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면세점 이상의 소득을 버는 사람들은 면세점 설정 및 상향조정으로 인한 감세혜택을 동일하게 누리지만, 면세점 미만의 소득을 버는 사람들은 면세점 설정 및 상향조정으로 인한 감세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면세점 이상 소득자는 각각의 소득격차가 t%(여기서는 30%) 감소하지만, 면세점 미만 소득자는 원래의 소득격차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소득격차가 비록 특정 수준 이상으로 면세점을 높일수록 납세자를 (초)고소득층으로만 국한시킴으로써 순수혜비율은 높아질 수 있지만(여기서는 면세점 700만원 이상부터), 과세액과 기본소득 지급액 자체를 줄임으로써 순수혜크기는 급감하게 되어 지니계수, 5분위배율, 10분위배율 등으로 살펴본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는 점차 작아지게 된다.

<표 5> 면세점에 따른 ‘소득세율 30% - 1/n 기본소득 모형’의 소득재분배 효과: 최종 단계

면세점	5분위배율		10분위배율		지니계수		기본소득 명목 재원	면세로 인해 줄어든 과세액	순수혜 크기 (비율)
	값	감소분 (감소율)	값	감소분 (감소율)	값	감소분 (감소율)			
0만원	2.58	1.72 (39.92%)	3.24	3.47 (51.72%)	0.186	0.080 (30%)	7,590	-	1,464 (60%)
100만원	2.58	1.72 (39.92%)	3.24	3.47 (51.72%)	0.186	0.080 (30%)	6,090	1,500	1,464 (60%)
200만원	2.65	1.65 (38.26%)	3.47	3.24 (48.25%)	0.189	0.076 (28.74%)	4,680	2,910	1,428 (60%)
300만원	2.84	1.46 (34.02%)	3.93	2.79 (41.53%)	0.196	0.069 (26.05%)	3,390	4,200	1,344 (60%)
400만원	3.12	1.18 (27.44%)	4.43	2.29 (34.07%)	0.208	0.057 (21.56%)	2,310	5,280	1,176 (60%)
500만원	3.4	0.9 (20.93%)	4.93	1.78 (26.58%)	0.223	0.043 (16.01%)	1,500	6,090	900 (60%)
600만원	3.67	0.63 (14.66%)	5.42	1.30 (19.31%)	0.237	0.028 (10.66%)	900	6,690	648 (60%)
700만원	3.92	0.38 (8.84%)	5.87	0.85 (12.63%)	0.249	0.016 (6.16%)	480	7,110	393.6 (80%)
800만원	4.13	0.17 (3.97%)	6.26	0.46 (6.82%)	0.258	0.008 (2.87%)	210	7,380	189 (90%)
900만원	4.25	0.05 (1.15%)	6.58	0.13 (1.99%)	0.263	0.002 (0.86%)	60	7,530	57.6 (96%)

주: 5분위배율과 10분위배율은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지니계수, 감소분과 감소율은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반올림으로 인해 수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우리는 <표 4>와 <표 5>의 비교를 통해 아래와 같은 명제를 도출할 수 있다.

<명제 5> 사회 구성원 중 단 한 명이라도 세전소득이 면세점 미만일 경우에는  $t\%$  평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에서 지니계수의 개선은  $t\%$  미만이 된다. '정책 이전 단계'와 '최종 단계'를 비교해보았을 때, 면세점이 높아질수록 5분위배율, 10분위배율, 지니계수의 개선효과는 (선형적으로는 아니지만) 점점 작아진다.

#### 증명 및 설명:

이는 '기본소득 명목재원'과 '면세로 인해 줄어든 과세액'의 합은 일정한데, 면세점이 어떤 사회 구성원의 세전소득을 넘어서면서부터 시작하여 상승함에 따라 '면세로 인해 줄어든 과세액' 자체가 커지므로 과세액과 기본소득 지급액을 줄임으로써 '과세 및 기본소득 지급'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면세점 이상의 소득을 버는 사람들은 면세점 설정 및 상향조정으로 인한 감세혜택을 동일하게 누리지만, 면세점 미만의 소득을 버는 사람들은 면세점 설정 및 상향조정으로 인한 감세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면세점 이상 소득자는 각각의 소득격차가  $t\%$  감소하지만, 면세점 미만 소득자는 원래의 소득격차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비록 특정 수준 이상으로 면세점을 높일수록 납세자를 (초)고소득층으로만 국한시킴으로써 순수혜비율은 높아질 수 있지만, 과세액과 기본소득 지급액 자체를 줄임으로써 순수혜크기는 급감하게 되어 지니계수, 5분위배율, 10분위배율 등으로 살펴본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는 점차 작아지게 된다.

#### 4. 나가며

우리는 2절과 3절의 분석을 통해  $t\%$  평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관련하여 다음의 다섯 명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면세구간이 전혀 없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는  $t\%$  평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은 특정 소득분포에 관계없이 지니계수를 정확히  $t\%$  개선한다. 둘째, 면세구간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회 구성원의 세전소득이 면세점 이상일 경우,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는  $t\%$  평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은 특정 소득분포와 관계없이 정책 이전 단계와 비교했을 때 지니계수를 정확히  $t\%$  개선한다. 다만 첫 번째 명제의 경우에서 2단계인 과세 단계에서 3단계인 최종 단계로 넘어갈 때 발생했던 소득재분배 효과의 일부분이 여기서는 1단계인 정책 이전 단계에서 2단계인 과세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동일한 크기만큼 과세효과로 이전될 뿐이다. 아울러 이러한 특성은 비단 지니계수뿐만 아니라 5분위배율과 10분위배율에서도 동일하게 성립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최종적인 소득분포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셋째, 동일한 소득분포 하에서, 면세구간이 전혀 없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는  $t\%$  평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에서  $t$ 값을 상승시킬 경우 순수혜규모는  $t$ 값에 비례하여 증가하지만, 순수혜비율은 일정하다. 넷째, 면세구간이 전혀 없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는  $t\%$  평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 하에서, 정적편향 단봉분포에서는 순수혜비율이 순부담비율보다 높으며, 부적편향 단봉분포에서는 순부담비율이 순수혜비율보다 높다. 좌우대칭 단봉분포에서는 순수혜비율과 순부담비율이 50%로 일치한다. 부적편향 단봉분포에서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사이에 위치하는 사람의 비율을  $\alpha\%$ 라고 한다면, 순부담집단의 비율은  $(50+\alpha)\%$ 가 된다. 반면 정적편향 단봉분포에서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사이에 위치하는 사람의 비율을  $\beta\%$ 라고 한다면, 순수혜집단의 비율은  $(50+\beta)\%$ 가 된다. 다섯째, 사회 구성원 중 단 한 명이라도 세전소득이 면세점 미만일 경우에는  $t\%$  평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에서 지니계수의 개선은  $t\%$  미만이 된다. '정책 이전 단계'와 '최종 단계'를 비교해보았을 때, 면세점이 높아질수록 5분위배율, 10분위배율, 지니계수의 개선효과는 (선형적으로는 아니지만) 점점 작아진다.

본고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첫째, 조세-급여 체계(tax and transfer system)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관련한 함의이다.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402,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는 0.357로서, 조세-급여 체계로 인한 지니계수 감소분은 0.045, 감소율은 11.19%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7). 참고로 2016년 국민부담률은 26.3%(한국납세자연맹, 2017),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10.4%였다(OECD, 2017). 비록 2016년 한국의 조세-급여 체계로 인한 지니계수 감소율 11.19%가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 10.4%보다는 높다고 하더라도 국민부담률 26.3%와 비교해볼 때에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여기서 조세로 거둔 금액을 어느 부문에 얼마나 쓸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복지 부문 내에서도 어떻게 쓸 것인지 등이 항상 첨예한 이슈로 등장한다는 점을 감안해볼 필요가 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지만, 그렇다고 ‘증세’한다고 해서 반드시 ‘복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본소득은 조세(tax)와 이전지출(transfer)을 긴밀히 연결한다는 점에서 ‘증세’가 ‘복지’로 이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사회(복지)정책에 비해 기본소득이 갖는 뚜렷한 장점이다(이건민, 2017).” 즉 기본소득 지급만을 위해서라는 특정한 용도로 지정된(“ring-fenced”) t% 평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은 소득불평등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예측가능하게 개선한다는 뚜렷한 장점을 지닌다. 게다가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을 개인소득세에 한정하여 그것도 비례세의 형태로 국한시킨 t% 평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은 어찌 보면 제한적이면서도 보수적인 형태의 기본소득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만약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과세를 누진적으로 설계하거나, 법인세, 자산세, 소비세 등을 재원에 추가하거나, 국토보유세-토지배당, 생태세-생태배당 등을 신규로 마련하거나, 공유부 기금을 바탕으로 한 사회배당을 더한다면 기본소득 정책의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는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이 경우 순수혜규모뿐만 아니라 순수혜비율도 더 크게 함으로써, 기본소득 정책의 정치적 실현가능성도 높일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뿐만 아니라, t% 평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기본소득이 도입되기 전이라도 특정 사회의 조세-급여 체계가 상대적으로 누진적인지 역진적인지, 또한 효율적·효과적으로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일종의 기준(benchmark)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즉 현재의 복지국가의 소득재분배 기능 면에서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일종의 잣대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면세점의 설정 및 높이와 관련한 함의이다. 앞서 <표 5>와 <명제 5>에서도 살펴보았듯이, t% 평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에서 면세점을 높이는 것은 결코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다. 면세점을 높일수록 과세단계에서 과세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특정 구간까지는 더 커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 특정 구간을 지나면서는 오히려 작아지게 된다(<표 4> 참조). 더 중요하게는, 면세점을 높일수록 최종단계인 기본소득 지급 후 단계에서의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는 더 낮아지게 된다(<표 5> 참조). 이는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 가능하다. 하나는 면세점이 어떤 사회 구성원의 세전소득을 넘어서면서부터 시작하여 상승함에 따라 ‘면세로 인해 줄어드는 과세액’ 자체가 커지므로 과세액과 기본소득 지급액을 줄임으로써 ‘과세 및 기본소득 지급’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면세점 이상의 소득을 버는 사람들은 면세점 설정 및 상향조정으로 인한 감세혜택을 동일하게 누리지만, 면세점 미만의 소득을 버는 사람들은 면세점 설정 및 상향조정으로 인한 감세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면세점 이상 소득자는 각각의 소득격차가 t% 감소하지만, 면세점 미만 소득자는 원래의 소득격차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아울러 위에서의 논의는 단지 t% 평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복지국가의 조세-급여 체계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조세로 거둔 재원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별개의 사안이긴 하지만) 면세점이 높아 면세가 적용되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복지국가의 재원규모 전체가 줄어들며, 그리하여 사회복지 급여와 서비스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도 작아지게 마련이다.

셋째, 소득분포의 형태와 기본소득의 필요성, 정당성과 관련한 함의이다. 기본소득은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와 같은 정적편향 단봉분포일 경우에 순수혜비율이 순부담비율보다 더 높게 된다. 특히나 지금과 같이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이 극심한 경우에는 순수혜비율 면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t% 평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만으로는 해당 사회에서 원하는 정도의 순수혜비율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과세를 누진적으로 설계하거나, 법인세, 자산세, 소비세 등을 재원에 추가하거나, 국토보유세-토지배당, 생태세-생태배당 등을 신규로 마련하거나, 공유부기금을 바탕으로 한 사회배당을 더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비록 반사실적 가정(counterfactuals)이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특정 사회의 소득분포가 좌우대칭 단봉분포나 부정편향 단봉분포에 가까울 경우, 높은 순수혜비율로 기본소득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과세를 누진적으로 설계하는 경우 순수혜비율을 어느 정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이 역시 일정한 한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반빈곤정책, 소득불평등 개선 정책, 소득보장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은 여전히 정당화될 수 있다. 사회부조, 실업보험, 공적연금 등과 비교해볼 때 기본소득은 포괄범위(coverage)가 매우 넓고, 수급자격 오분류로 인한 사각지대와 부정수급 문제 등의 각종 오류를 거의 범하지 않으며, 과거의 노동경력, 현재의 노동력과 노동의사 유무에 조건적이지 않다는 면에서 다양한 장점을 지닌 소득보장정책이다.

## 참고문헌

- 강남훈(2017).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의 가구별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사회경제학회 2017년 겨울 학술대회(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문. [일시: 2월 10일 11:00~12:30, 장소: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106호]
- 강남훈(2011). “한국에서 기본소득 정책과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재분배효과 비교”. 『마르크스주의 연구』 8(3). pp.76~98.
- 김교성(2009).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36(2). pp.33~57.
- 백승호(2010). “기본소득 모델들의 소득재분배 효과 비교분석”. 『사회복지연구』 41(3). pp.185~212.
- 이건민(2017).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효과”. <<녹색전환연구소 전환소식>> 2017년 5월호. [게시일: 5월 8일]  
[http://igt.or.kr/index.php?mid=column&page=2&document\\_srl=56704](http://igt.or.kr/index.php?mid=column&page=2&document_srl=56704)
- 이현주, 장지연, 전병유(2017). “현금 기본소득과 현물 공적서비스의 불평등 완화 효과 비교 연구”. 『사회과학연구』 56(1). pp.93~118.
- 조경엽, 김영덕(2017). “기본소득제가 소득재분배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국제경제연구』 23(3). pp.59~97.
- 최태훈, 염명배(2017). “기본소득제가 소득불평등 해소에 미치는 효과 분석: 최저소득보장제와 비교를 중심으로”. 『재정정책논집』 19(4). pp.95~120.
- 통계청(2017).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bSeq=&aSeq=365327&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bSeq=&aSeq=365327&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 한국납세자연맹(2017). “[보도자료] 2016년 국민부담률 26.3% 역대최고, 전년대비 1% 상승”. 한국납세자연맹. [게시일: 7월 30일]  
[http://www.koreatax.org/taxboard/m/bbs/board.php?bo\\_table=outboard2&wr\\_id=4718](http://www.koreatax.org/taxboard/m/bbs/board.php?bo_table=outboard2&wr_id=4718)
- Callan, Tim, Cathal O’Donoghue, Holly Sutherland, and Moira Wilson (1999). “Comparative Analysis of Basic Income Proposals: UK and Ireland”. The Microsimulation Unit. Number MU/RN/31. Department of Applied Economics. University of Cambridge.
- Garfinkel, Irwin, Chien-Chung Huang, and Wendy Naidich (2003). “The Effects of Basic Income Guarantee on Poverty and Income Distribution”. In: *Redesigning Distribution*, Chapter 8, pp.117~141.
- Honkanen, Pertti (2014). “Basic Income and Negative Income Tax: A Comparison with a Simulation Model”. *Basic Income Studies* 9(1-2). pp.119~135.
- Miller, Annie (2017). *A Basic Income Handbook*. Edinburgh: Luath Press Limited.
- OECD (2017).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OECD. [최종검색일: 2018년 9월 28일]  
<http://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